

## 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KTB 배당플러스찬스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2. 시행예정일: 2020 년 9 월 23 일
3. 변경사항:
  - 최근 결산기 기준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
  -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(5 등급 → 4 등급)
  - 클래스 신설(CF, C-P, C-Pe, CP, CPe, S-P, S-P(퇴직))
 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  - 전자증권법 시행 사항 반영
4. 상세 변경사항: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<b>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* 제 2 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도 적용	클래스 신설	-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(CF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-P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-Pe)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P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Pe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(퇴직))
<b>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-	2020.09.23 클래스 신설(종류 CF, 종류 C-P, 종류 C-Pe, 종류 CP, 종류 CPe, 종류 S-P, 종류 S-P(퇴직))  투자위험등급 변경(5 등급 → 4 등급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클래스 신설	-	<종류별 가입자격>: 별첨 1. 참조 <보수 및 수수료 차이>: 별첨 2. 참조
제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수익률변동성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변경	수익률변동성: 4.04%  투자위험등급: 5 등급(낮은 위험)	수익률변동성: 6.21%  투자위험등급: 4 등급(보통 위험)
11. 매입, 환매, 전환기준	클래스 신설	-	(2)종류별 가입자격: 별첨 1. 참조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클래스 신설  최근 결산기 기준 갱신	-  -	<보수 및 수수료 차이>: 별첨 2. 참조  최근 결산기 기준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갱신
14. 이익배분 및	연금저축 및	-	별첨 3. 참조

과세에 관한 사항	퇴직연금 클래스 신설에 따른 연금계좌 과세 사항 추가		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최근 결산기 기준 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갱신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2019 년 회계기간 재무내용 반영  최근 월말 기준 업데이트	2018 년/2017 년 재무내용  -	2019 년/2018 년 재무내용  2020 년 8 월말 기준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
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에 위탁하여야 하며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	-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에 위탁하여야 하며, <u>전자등록기관</u>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<u>전자등록기관</u>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(2)임의해지		5)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(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)  위의 3) 및 4)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	5)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(다만, <u>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)  위의 3) 및 4)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

		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.	통지하여야 합니다.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	<p>(2) 자산운용보고서  (가)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</u>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 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,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작성 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 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</u>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	<p>(2) 자산운용보고서  (가)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</u>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 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,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작성 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 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</u>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

**별첨 1. <종류별 가입자격>**

종류별	가입자격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(CF)	가.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) 나.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) 다.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-P)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

개인연금(C-Pe)	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P)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Pe)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
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
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(퇴직))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

별첨 2. <보수 및 수수료 차이>

(1)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구분	지급비율(%)		
	선취판매수수료	후취판매수수료	환매수수료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(CF)	-	-	-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-P)			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-Pe)			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P)			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Pe)			
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			
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(퇴직))			
지급시기	매입시	환매시	환매시

(2)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

구분	지급비율(연간, %)				
	집합투자 업자보수	판매회사 보수	신탁업자 보수	일반사무 관리보수	보수합계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(CF)	0.453	0.03	0.03	0.017	0.53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(C-P)		0.60			1.10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(C-Pe)		0.30			0.80
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CP)		0.52			1.02
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(CPe)		0.26			0.76
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		0.18			0.68
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(퇴직))		0.17			0.67

주)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의 "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별첨 3. 연금과세 사항

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

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을

	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
<b>수령요건</b>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<b>세액공제</b>	<p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li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. [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]</li> <li>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중 적은 금액. [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]</li> </ul> <p>※ 종합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기간에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5세 이상인 거주자. [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li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li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/ul>
<b>연금수령시 과세</b>	연금소득세 5.5 ~ 3.3%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, 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
<b>분리과세한도</b>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
<b>연금외수령시 과세</b>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
<b>해지가산세</b>	없음
<b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천재지변</li> <li>-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</li> <li>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</li> <li>-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</li> <li>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</li> </ul>
<b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</b>	연금소득세 5.5 ~ 3.3%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, 지방소득세 포함)
<b>연금계좌 승계</b>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##### ①세액공제

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
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에 대해 세액공제

②과세이연: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

③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: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.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(<http://pension.fss.or.kr>)의 '과세제도안내' 참조

※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